

# 한국음성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 1. 14

한국음성학회는 음성 분야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본 연구 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은 음성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본 학회는 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모든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학술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제1장 연구 윤리 규정

### 제1조 (연구자의 윤리 규정)

- ① 본 학회 소속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고,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 ② 본 학회 소속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음성자료를 수집, 배포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 ①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 연구결과에 대한 출처를 적절히 나타내야 한다.
- ②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 ③ 중복 투고,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을 본 학회에 투고하는 시점에 동일한 또는 동일하다고 제3자에 의해 인정될만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이지 않아야 한다.
- ④ 부분적 중복 게재 허용  
이미 발표된 논문이 일반 학술지에 게재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새로 투고되는 논문에 포함된 경우, 저자는 이미 게재된 사항을 본문에 언급해야 하며, 새로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기존 논문에 비해 현저한 비중으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이미 투고된 논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발표된 논문이 학술대회 초록집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논문을 확장하여 발표 할 수 있다. 부분적 중복 게재의 허용은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장 및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 제3조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②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책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가 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2장 학술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5조 (학술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음성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학술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윤리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7조 (윤리위원회 임원과 업무)**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제8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학회 회장 또는 윤리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학회 이사회의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 ① 학회 회원 또는 윤리관련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 절차)**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술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④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⑤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12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①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 ② 심의 절차
- ③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④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3조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중복투고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해당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

나. 논문 투고자의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다. 학회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지

라.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3회 이상 위반 또는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 ②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규정 위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결정한다.

가. 경고

나.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누적경고 3회 이상 또는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제14조 (후속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②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 위원회의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5조 (행정사항)**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연구윤리 준수동의서)** 논문을 제출하는 저자는 (양식 2)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심사의뢰와 동시에 학회사무국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1.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은 200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